

## 화순군축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

### 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97. 5. 28 화순군수
- 나. 회 부 일 자 : 97. 5. 28
- 다. 상 정 일 자 : 97. 6. 24 (제55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)

### 2. 제안 설명요지

- 가. 제 안 자 : 내무과장 이 수 철
- 나. 폐지사유
  - 의료법 제62조에 보건 의료 업무를 축탁할 수 있는자는 보건사회부 장관 또는 도지사로서 되어 있어, 동 조례가 현실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려함.
- 다. 주요내용
  - 화순군축탁의료인보수지급조폐폐지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민병항)

- 본 조례 폐지안은 현실성이 없으므로 폐지코자하는 조례안으로서 화순군 조례 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### 4. 질의 답변 요지

"생 략"

### 5. 토론요지

"생 략"

6. 심사결과

"원안가결"

첨 부 : 화순군축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1부. 끝.

## 화순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97-64
----------	-------

제출일자 : 1997. 5. 28

제 출 자 : 화 순 군 수

### 1. 제안이유

의료법 제62조에 보건의료업무를 촉탁할 수 있는자는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로서 되어 있고 동 조례가 현실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임.